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, 2026. 3. 5. 제정, 2026. 7. 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, 해양조사사무소, 어업관리단, 지방해양수산청, 항행정보시설사무소·해양수산사무소 및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연구소 및 해조류연구소의 소재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, 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161호, 2024. 1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관할구역 및 인천공항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인천지원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중 영종구를 제외한 지역, 경기도 중 김포시·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안산시·수원시·오산시 및 화성시
여수지원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곡성군·구례군·고흥군·화순군 및 보성군
목포지원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여수지원 및 완도지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·군
완도지원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완도군·강진군·해남군 및 장흥군
인천공항지원	인천광역시 영종구	인천광역시 중 영종구

별표 2의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표 서해해양조사 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3의 서해어업 관리단의 위치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”를 “대전광역시”

로, “전라남도 일부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”로, “전라남도 관할구역”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남해어업 관리단의 관할구역란 2)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5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“광주광역시,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·군”로 한다.

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여수지방 해양수산청	여천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여수시	광양항 중 여수지역
	광양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통 합특별시 광양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양시 및 순천시
목포지방 해양수산청	진도항행정정보시설사 무소	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진도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진도군· 완도군·강진군·장흥군 및 해남 군(화원면은 제외한다)
	완도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완도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완도군

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남해수산연구소	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여수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별표 11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24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25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